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정당명: 정의당】

목 차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02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07
3.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12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17
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22
6.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26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28
8.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32
9. 인권사회(여성·다문화·빈민·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36
1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40

1_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1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가. 현황과 문제점

-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음. 이윤주도 성장 체제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22만명에 달하며, 해고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음.
-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이나, 1인당 파용자 보수총액 인상률은 1.4%에 그치고 있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실질임금 인상률은 실질생산성 증가율만큼 올라가지 않았음.
- 전체 노동자 중에서 중간 이하는 2005년에 751만6천명(50.2%)에서 2010년에 884만4천명(51.9%)이 된 뒤 2015년에 1091만2천명(56.5%)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평균임금 이상 받는 노동자들은 지난 10년간 임금이 108만원 인상되었으나 저임금이하 계층은 25만원 인상되는데 그쳐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나. 목표

-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국민월급 300만원 공약에 따른 4년 후 임금구간별 변화]

현재 (2015년 기준)			4년 후 (2020년 기준)		
구 분	인 원	2015년	2020년	총인상액	연평균인상률
저임금 이하	492만명	85만원	155만원	70만원	16.2%
전일제	288만명	106만원	176만원	70만원	13.5%
시간제	204만명	57만원	127만원	70만원	22.2%
저임금~중위	599만명	171만원	241만원	70만원	8.9%
중위~평균	73만명	216만원	286만원	70만원	7.3%
평균 이상	767만명	369만원	439만원	70만원	4.4%
합계/ 전체평균	1,931만명	230만원	300만원	70만원	6.9%

다. 이행방법

- ①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과 실질적인 적용 확대(☞정책2 참조)
- ②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 보장(☞순위2 참조)
- ③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도입(☞정책2 참조)
- ④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정책3 참조)
- ⑤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정책4 참조)

라.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2 최저임금 1만원으로, CEO 등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가. 현황과 문제점

-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월 환산 1,260,270원)으로 2013년 미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약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201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41.1%, 임금총액 대비 32.7%에 불과함.
- 2013년 최저임금은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35%, 중위임금 대비 43%에 불과해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각각 20위, 21위로 하위권. 2015년 8월 기준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는 182만명이고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 명(전체 노동자의 11.5%)으로 이들은 모두 취약계층 노동자였음.
- 2014년 10대 재벌 등기이사 1인당 평균연봉은 16억 81백만원이며, 전체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은 35백만원, 최저임금은 13백만원임. 2014년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에서 전체 노동자 평균연봉은 2,676만원(월 223만원)으로 188명의 등기이사 평균연봉과 62.8배 차이임.
- 2014년 기준 4억 초과 근로소득자는 총 11,500명이고 이들의 근로소득 총 8조 9,351억원.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4억 초과분은 4조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2014년 기준 323개 공기업 중 이사장 연봉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은 총 130곳임.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혁

- 최저임금법 개정(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물가인상을 등을 고려함.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회의 공개 등 결정 절차 개선함)

②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 최고임금법 제정
대기업 고위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약 4억5천만원)로 상한제 실시
공기업 이사장 등은 최저임금의 10배(약 1억5천만원)로 상한제 실시
국회의원과 장관 등은 최저임금의 5배(약 7천500만원)로 상한제 실시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내 2019년까지

3 초과이익 공유제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

가. 현황과 문제점

-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세전이익율은 4.4~4.7%과 3.0~4.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초과이익은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거나 비용절감 등을 위한 협력기업의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수익성 격차가 늘면서 기업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도 확대. 자동차 대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에 비해 1차 부품협력업체들의 월급은 절반, 3차 협력업체는 1/3 수준. 전자, IT업종 역시 대기업은 평균 월급이 493만원이나 1차 협력업체는 263만원, 2차 협력업체는 253만원, 3차 협력업체는 172만원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 2013년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 보다 중졸이하는 12.1% 높고, 고졸은 8.4%, 대졸은 17.4% 낮은 수준. 고학력 여성은 자녀출산과 양육 등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고, 저학력 여성은 생계를 위해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

- 2013년 우리나라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6.6%로 남자가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3만원의 임금 수준. 반면 OECD에서 조사한 11개국의 남녀간 임금 격차는 평균 15.5% 수준임.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실시와 초과이익 공유시 세제 지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운영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유한 초과이익에 대해 30%의 세액공제 적용)

②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으로 여성 일자리 개선
-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공기업·대기업에 5% 청년의무고용 시 30% 이상 여성할당 병행
- 임신휴직 도입,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4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가.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거나 전무한 상황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
-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비중이 매우 낮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이마저도 감소한 상황임. 특히 시간제의 사회보험 가입 비중은 국민연금 13.3%, 건강보험 17.5%, 고용보험 18.8%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업 II 도입

- 특수고용노동자(1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②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가입자로 전환
- 자발적 이직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 지급
- 실업급여 기간 확대 : 최대 1년

③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등
- 최저임금액의 80%, 최대 1년 지원 (* 청년실업자의 경우 '청년디딤돌급여'로 별도 지원)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라. 이행기간

① 두루누리 II 도입

- 1인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2016년 24억 → 2020년까지 258억원
- 국민연금료 지역가입자 지원 연 5천억원
- 재원조달방안: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

②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추가 재정 소요: 연 3조원
- 재원조달방안: 고용보험료 인상

③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

- 추가 재정 소요: 연 2조원
- 재원조달방안: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

정책 순위	2_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내용	<p data-bbox="312 439 1382 517">1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p> <p data-bbox="312 591 592 629">가. 현황과 문제점</p> <ul data-bbox="336 647 1398 857"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8월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868만명(전체 노동자의 45.0%). 그러나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 2014년 8월 임시직 비율은 21.7%로 OECD 평균 임시직 비율인 11.1%의 2배. <p data-bbox="312 920 644 958">나. 목표 및 이행방법</p> <ul data-bbox="336 976 1398 1249"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도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 파견법 3단계 폐지: 파견대상업무 단계별 축소 → 하도급업무 등 직업안정법 적용 확대 →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p data-bbox="312 1323 523 1361">다. 이행기간</p> <ul data-bbox="336 1379 687 1417"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p data-bbox="312 1570 1358 1648">2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절반 감축</p> <p data-bbox="312 1722 592 1760">가. 현황과 문제점</p> <ul data-bbox="336 1778 1398 1989"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33만명. 2015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182만명. 10대 재벌기업 비정규직은 49만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고,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 1인당 세액공제액이 일부 확대되었으나 유인효과는 제한적임.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비정규직 감축
 - 2015년 현재 863만명인 비정규직을 매년 107.8만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해 4년내 절반인 431만명으로 축소
- 공공기관 간접고용 상한제, 간접고용 현황 공시제 도입. 상사·지속적 일자리면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원칙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3 5시 칼퇴근법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가.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14년 연 2,240시간으로 OECD 중 멕시코에 이어 2위. OECD 평균(1,770시간)에 비해 354시간, 가장 짧은 독일(1,302시간)보다 930시간 더 일하는 상황.
- 법정 초과근로한도(주52시간)로 제한하면 최대 62만개 일자리 창출. 유럽연합 지침대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면 일자리 105만개 창출 가능.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 시정
-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 독소조항 개정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관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법」 제정
- 하루에 한시간 씩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4 선진국형 연차휴가 한달 도입으로 휴식이 있는 삶

가.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제공. 반면, ILO 관련 협약에 따르면 선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게 1년 근속기간에 대해 3주 이상 휴가 부여 및 2주간 최소 휴가기간 명시. 유럽연합은 1년에 최소한 4주의 휴가 제공. 독일은 6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18일의 연차 제공.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휴일/국경일 유급휴일화
-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 입사 첫해부터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실시, 최소 2주 휴가제 도입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공휴일제도 도입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5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감정노동자 보호

가. 현황과 문제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년)에 따르면, 직장인의 86.6%가 괴롭힘을 당한 적 있음.
- 이미 스웨덴은 1993년 ‘직장괴롭힘 조례’ 채택, 핀란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장 괴롭힘과 기타 부적절 행동에 관한 특별조항’ 추가. 국제노동기구는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내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 고객대면 노동자가 7~900만 명임. 병원, 사무금융 등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자살에 이르기도 함. 게다가 오히려 사업주들이 “미스터리 쇼퍼” 등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고객의 인격적 모독을 방치하고 있음.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인정기준 역시 정비되어 있지 않음.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 직장내 폭언·폭행을 포함한 지속적인 괴롭힘 처벌 및 산업재해 인정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감정노동 보호 관련 법제화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의무화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인정 법제화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법제화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6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채용

가.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9월 청년(15~29세) 실업률 8.5%, 청년 실질실업률 작년 상반기 22.4%
-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3% 고용의무 부과 중.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 2014년 공공부문 정원 30만명 기준 5% 할당 시 약 1.5만개 일자리
 - 2014년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59만명 기준 5% 할당 시 약 23만개 일자리
- 청년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 이하, 전문대 및 지방대 졸업자 등에게 할당하고, 여성 비율도 30% 이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채용제도 병행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7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가.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 반면, 재작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청년은 29.3만명에 불과. 고용노동부의 '청년성공패키지'는 신청자가 6만 7천명에 불과. 80만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공식적인 실업안전망 밖에 있음.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15-34세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을 제공하는 청년급여는 청년세대의 위기에 특성화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임.
 - 민간위탁 학원 중심의 정부 정책과 달리 공공 위주의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연계
-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재학생,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1년 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 보장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정책 순위	3_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내용	<p data-bbox="327 443 1316 510">1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p> <p data-bbox="327 589 606 627">가. 현황과 문제점</p> <ul data-bbox="343 645 1396 1377"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순환출자가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순환출자 해소가 재벌의 소유구조의 개선을 가져왔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61개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가 있는 경우는 8개 그룹, 이 중 순환출자가 총수의 지배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산업개발 등 3곳에 불과 • 비지배주주의 감시기능 강화 관련 소액주주 등이 독립적으로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재계 반발로 제도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 • 금산분리 강화 관련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은 진척이 없으며,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였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금융개혁을 빌미로 관련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하였으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 제기 <p data-bbox="327 1456 662 1494">나. 목표 및 이행방법</p> <ol data-bbox="327 1523 1109 1982"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ul data-bbox="351 1556 710 1594"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②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근로자 대표 추천 이사 선임 <ul data-bbox="351 1653 486 1691"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개정 ③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ul data-bbox="351 1749 933 1787"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 ④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ul data-bbox="351 1845 837 1883"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 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방안 강화 <ul data-bbox="367 1942 678 1980"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2 재벌 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가. 현황과 문제점

-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대표적인 6대 갑질은 ①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④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 행위, ⑥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
- 이와 관련 입법화는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입점업체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은 부분적 반영,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만 일부 적용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은 미처리,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처리 등의 문제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 징벌적 조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손배 적용범위 확대 및 한도 증액)
- ② 공익적 시민단체 고발권 부여 및 집단소송제 도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 ③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당사자 권리 강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불공정거래 피해자 해당행위 금지 청구제)
 - 소비자기본법 개정(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피해규제 명령제)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3 재벌 일가의 특혜와 기득권 근절

가. 현황과 문제점

- 재벌의 사익편취 행위는 이사 또는 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부당주식 거래와 회사기회 유용 일감몰아주기가 대표적임. 특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일가의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임. 2015년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13조 8,088억원으로 추정됨. 그룹에도 2015년 기준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계열사가 112개에 달하고 있음.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은 분식회계, 탈세, 횡령, 배임, 위법 배당 등 7939억 원 규모의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1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한화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 받음. 이재현 CJ 회장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음. SK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을 횡령함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을 최종 선고 받았으나, 2015년 생애 두 번째 사면을 받아 형기 중에 풀려남. 또한 재벌 일가는 형기 중에도 일반 국민과 달리 항제면회에 이어 형집행 정지나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받고 있음.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 상속·증여세법 개정(정상거래비율, 한계지분을 차감 없이 전체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규제대상 지분 요건 20%로 하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업무상 배임·횡령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

②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등 유전무죄 근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50억 이상 배임·횡령죄 집행유예 불가)
- 재벌 일가 항제면회/항제노역 금지,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 상법 개정(특가법 상 징역형 이상 선고 받은 자 기업체 임원 등록 제한)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4 재벌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 지원과 육성

가. 현황과 문제점

- 수출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전략이 지속되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와 기술개발 투자여력 약화. 계층적인 하도급 분업생산구조의 최말단에 위치한 영세 소기업의 퇴출, 제조업의 창업률 저하 현상이 고착화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대표적 원인인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제도는 ① 협력사업 성공시 혁신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협력기업은 기본이익만 제공, ② 협력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보상 미흡 및 투자유인 부족, ③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낮은 납품가격 반영률, ④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단가 인하로 하청업체의 수익성 악화, 투자위축
-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901개이고 조합원 업체 수는 6만5,558개로 전체 산업조직화율은 2.1%, 이가운데 제조업 조직화율은 9.5%에 불과. 일본은 조합수가 4만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직률이 낮은 것은 중소기업이 단체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이 원인
-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이 있으나, 까다로운 사전인가절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
- 일본과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공동해외진출·공동기술개발 등을 허용했기 때문.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법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①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 대리점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 ②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강제 조정권)
 -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허가제 및 영업 제한)
- ③ 대기업의 초과이익, 혁신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운영방안)
- ④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상공인단체 집단적 교섭권 보장
 - 공정거래법, 대리점공정화법 개정
-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실시
 - 대리점공정화법과 하도급법 개정
- ⑥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신용카드 1% 이하, 체크카드 0%)
- ⑦ 소상공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 개정(보험료 50% 지원)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정책 순위	4_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내용	<p data-bbox="320 405 1334 47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 튼튼 재정으로 복지 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p> <p data-bbox="316 551 600 589">가. 현황과 문제점</p> <ul data-bbox="331 607 1398 1518"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GDP대비 24.7%에 불과해 OECD 평균 34.1%(2014년)에 비해 무려 9.4%나 부족. 2015년 GDP인 1,546조원에 적용하면 OECD 평균에 비해 약 145조원이나 부족, 이는 작년 중앙정부 복지지출 예산 120조원 보다 더 많은 자원. 이는 재벌과 부유층이 소득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과 부동산 투기, 고소득 전문직 탈루, 편법 증여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 MB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를 인하함. 법인세 인하 이후 사내유보금은 30대 재벌 기업만 710조원이 쌓임(2015.3 기준)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현행 소득세의 세율 구간간 격차가 불규칙하고 복잡함. 특히 OECD 대부분 국가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0~50% 수준인데 우리의 최고세율은 38%에 불과함 •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비해 평균 65%에 불과,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의 60~70%에 불과해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짐. • 2015년 현대차 정몽구 부자는 현대글로벌비스 주식 팔아 1조 5000억원의 소득을 얻었으나 세금은 20%만 부담함. 이자배당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으로 너무 높음. <p data-bbox="316 1592 651 1630">나. 목표 및 이행방법</p> <ol data-bbox="316 1666 1134 1966"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세법 제정(소득·법인·상속증여세 세액 등에 10~20% 부과) ② 법인세 최고세율 MB정부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개정(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로 개정) ③ 기형적인 소득세 세율 체계 전면개편, 누진세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개정(소득세율 체계 [5-15-25-35-45%]로 개편)

④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 및 과세강화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로 상향
-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종부세로 단일화. 합산 과세 및 최고 세율은 2008년 종부세 수준으로 상향함
 -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지방세법 개정

⑤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성 세율적용 폐지

- 소득세법 개정(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2 경제민주화 지원, 부의 대물림 억제

가. 현황과 문제점

-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세전이익율은 4.4~4.7%과 3.0~4.0% 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해서 달성한 이익은 협력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
- 법인세 감세 이후 기업의 사내유보금 급증했지만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투자 자산 증가로 이어짐. 비업무용 자산에 따른 이자 및 배당수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한미약품의 사주가 지난 2012년 미취학 아동인 손주 7명에게 각각 증여한 25억원 상당의 주식 가액이 최근 신약개발에 따라 주가가 폭등한 1천억대로 급증, 금수저 논란 가중시킴.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 2014년 기준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이고,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
- 2013년 전체 피상속인수 282,232명 중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은 6,275명, 2.2%에 불과. 과도한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재산이 수십억이 넘는 경우에도 상속세 한푼도 안 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대·중소기업 공유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청·협력업체와 공유한 초과이익에 대해 30%의 세액공제 적용)

②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도입

- 법인세법 개정(사내유보금의 이자·배당·임대료 수익 등에 10% 할증 과세)

③ 거액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재계산제도 확대 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증여 재산 폭등시 재계산제 강화, 세대생략 상속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

④ 상속공제 5억으로 축소, 고액상속 과세 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상속공제 단순화하고 한도를 5억원으로 하향)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3 청년 기 살리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감면

가. 현황과 문제점

- 취업 이후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는 미혼가구에 대한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
- 사실상의 생활필수품인 승용차, 특히 사치품이라 할 수 없는 중소형 승용차에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 현재 전월세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은 월세 지출액에 대한 10% 세액공제가 전부 이다시피한 상황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고, 19대 국회의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 1인당 세액공제액이 일부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에 대한 유인효과는 제한적임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생애 최초 소득자에 대한 “파이팅”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생애최초 소득자에 1백만원까지 세액공제)

② 중소형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폐지

- 개별소비세법 개정(배기량 2천CC 미만의 중소형 승용차 폐지)

③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월세 세액공제율 15%로 확대, 전월세 이사비용 적용)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액공제 확대)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물망식 탈세·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

가. 현황과 문제점

-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재정현안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예산낭비 논란이 반복됨.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과 일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재자문회의나 일회적인 공청회 등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 2015년 고액·상습 체납자(5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는 2,22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1인당 평균 17억원)에 달함. 또한 2014년도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27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인당 평균 9억 7천만원(소득적출률 32.9%)의 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남
- 예산심의 때마다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 논란이 되풀이 되면서 국회 예산심의회가 밀실에서 몇몇 힘있는 실세 의원들과 정부간의 줄다리로 결정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음.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대규모 예산 사업 등에 전국민 참여예산제 실시

- 국가재정법 개정(연말정산 시 재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내용 포함)

② 탈세 및 부정부당입찰에 대한 처벌 강화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계약법 등 개정

③ 예산실명제 도입, 쪽지예산 카톡예산 근절

-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증액예산은 의원 실명과 함께 증액 필요성을 서면으로만 제출)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의당 조세개혁[안] 세수 증감액 추계

	세목	주요 내용	세수 증감
증액 세목	사회복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액에 10~20% 부과	20조원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 25%	8조원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3조원
	소득세	5-15-25-35-45% 세율 개편	3.4조원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등	2조원
		월세소득 종합과세 등	3조원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4조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4.5조)	8.5조원
상속 증여세	공제 5억 제한 등 실효세율 강화	1.6조원	
	증여세재계산제, 세대생략 할증	추계 미정	
증액 세수 합계			+49.5조원
감액 세목	조세특례 제한법	생애최초 소득자 백만원 세액공제	추계 미정
		월세 세입자 주거비 세액공제 등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확대	
	개별소비세법	중소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0.5조원
감액 세수 합계			-0.5조원
전체 증액 세수			49조원

<p>정책 순위</p>	<p>5_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p>
<p>내용</p>	<p>1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행복한 평생복지</p> <p>가. 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은 불행하고, 청·장년의 고용은 불안하고 노인은 빈곤한 대한민국. <p>① 태아·영유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증가,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남성 4.5%) -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으로 이용률이 10.6%에 불과하고 90%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 -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2012년 기준 월 평균 임금 155만원) <p>② 아동·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8세 건강보험보장률 53.9%에 불과하고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관리시스템 부재 - 늘어나는 아동학대,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및 인력부족(2014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51개소, 상담원 364명에 불과) - 2013년 기준 근로청소년은 22만명으로 중고생 1/3이 알바를 경험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율은 25%에 불과, 임금체불, 초과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 경험이 31.9% <p>③ 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이나 실업급여를 받은 청년은 29.3만명에 불과 - 반값등록금 공약 불이행, 사립대학 고액 등록금으로 학생과 학부모 부담 증가 - 청년의 14.7%는 주거빈곤 상태이나 임대료는 비싸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에 불과 - 2015년 현재 청년실질실업률 22.4%, 고졸취업자 월평균임금 145만원(대졸의 77.3%) 수준 <p>④ 중장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2015년 은행권 매각 부실채권은 총34.2조원이나 이중 2.7조(8%)만 공적자산관리회사에 매각, 90% 이상이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재매각되면서 악성부실채권으로 변질 - 소득에 비해 과도한 4대 가계비 부담. OECD 국가 중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14년째 1위,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상승 가속화. 가계의 연간 보건의료비 증가(2008년 157만원→2014년 205만원), 가계 통신비는 OECD 3위.

⑤ 노년

- 노인 빈곤률 OECD 1위(2013년 49.6%)이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공적연금 미비, 부양 의무자 기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노인빈곤층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평균수명(2014년 82.4세) 증가, 독거노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버주택 부재, 국공립장기요양 시설 부족 등 노후정책은 미흡

나. 목표

-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책으로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다. 이행방법

① 태아·영유아

- 산모·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
-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파파쿼터제 도입, 출산전후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확대, 민간 어린이집 교사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② 아동·청소년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및 자녀담당의사 도입
-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정비, 학교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
- 초중고학교 10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 안심알바신고센터 확대 등 알바 권리 보장

③ 청년

- 미취업 청년에게 디딤돌 급여 지급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진짜 반값 등록금 실현
- 반값임대 공정주택 건설, 만19세 이상 안심대출제도 도입, 주거급여 확대
- 공기업·대기업 5% 청년고용할당제, 여성·고졸 지방 기회균형채용 제도 도입

④ 중장년

- 저소득층 부채탕감과 악성 부실채권 규제
- 4대 가계비(통신·주거·교육·의료) 절감

⑤ 노년

- 부양의무제 폐지, 공적연금 하나로 OECD 수준 노후소득 보장
-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공실버주택 확대

라. 이행기간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2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전 국민 기초복지

가. 현황과 문제점

- 의료, 주거, 교육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는 대한민국.

①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60% 수준, 국민 74.3%가 민간의료보험 가입(2012년) 등 의료비 부담 증가
- 열악한 공공의료체계, 3차 병원 쏠림 현상 심각, 계속되는 의료영리화 정책

② 주거

- 높은 집값,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증가(RIR 29%)
-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원가 공개거부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거품을 방조.

③ 교육

-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불이행, 국고지원 거부로 누리과정 보육대란 초래
-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고등학교 학부모 납입금 부담, 반값등록금 공약 불이행

④ 장애

- 장애인을 천편일률적 등급화하고 있는 장애인등급제,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
- 유명무실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로 노동조건 열악

⑤ 복지인프라

- 사회서비스 분야 과도한 민간의존. 종사자 처우 심각 등 질 문제 발생 및 지역간 공급 격차.
- 복지공무원 부족으로 1인당 담당인구 3,919명(2005년 기준 영국 284명, 호주 806명).

나. 목표

- 기초복지 강화로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다. 이행방법

①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80% 이상 확대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전국민건강 담당의사 도입, OECD 수준 보건의료 인력 확충
- 의료영리화 추진 반대, 공공병원 확충

② 주거

- 주거비지원 확대 및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연간 15만호 공급(OECD 평균 12% 목표)
-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로 도입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

③ 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제
- 초등학교 2배 확대,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균형발전

④ 장애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지역거주 종합정책 수립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발굴

⑤ 복지인프라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두루누리Ⅱ 도입(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 복지공무원 대폭 확대로 찾아가는 국민복지 실현
-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로 복지강국 진입

라. 이행기간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마. 재원조달 방안

- [정책순위 4번] 조세개혁방안으로 복지증세

<p>정책 순위</p>	<h2>6_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h2>
<p>내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1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p> </div> <p>가. 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3년 기준 23.6%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자급농정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농지를 유지, 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명무실해졌으며 농지가 전체 국토 면적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음. • 농촌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39%에 달하며 후계농업인이 없는 농가는 90%에 이르고 있음. • 농가소득은 1991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7.4% 수준에서 2013년 62.5% 수준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그동안 시행되어온 지역발전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거나 지방정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유사한 특구를 남발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였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기반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일률적인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음. <p>나.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주권 확보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민의 삶의 질 개선 •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실현 • 농민의 농정참여 확대로 민주농정 실현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내발적 지역발전 • 일자리-교육-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살맛나는 지역 실현

다. 이행방법

- ① 식량자급률 50% + 적정농지 확보 법제화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부활로 농산물 가격 지지
 -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적정가격보장제로 가격 안정
 - 무역이득부담금제 도입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 ② 농가소득 보장과 교육복지 투자로 살기좋은 농촌
 - 목표소득 직불제로 소득증대,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
 -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1마을 1그룹홈 등 복지농촌
 - 농부증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농업노동재해 보상 확대

- ③ 전국적 차원에서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의 전략적 배치
 - 중앙-지방정부의 상호협업, 민관협력을 통해 선택과 집중
 - 지역 과학기술 역량에 따라 공공 R&D 투자 확대 등 지원
 - 지역별 제조업 첨단연구소 설립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 ④ GDP 10% 수준을 목표로 풀뿌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복지확대 + 일자리 창출
 - 광역도에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 추진

- ⑤ 지방대 균형발전, 공공병원 확충 등 생활격차 해소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 정부책임형 대학 구조개혁으로 대학 양극화 해소
 -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및 기존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전환

라. 이행기간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p>정책 순위</p>	<p>7_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p>
<p>내용</p>	<p>1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p> <p>가. 현황과 문제점</p> <p>① 거꾸로 가는 고위험·고갈등·고탄소 에너지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계는 안전성·경제성·수용성 문제로 원전을 줄여가는 추세이며,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용량은 20기가와트 증가한 반면, 태양광은 원전의 9배, 풍력은 18배가량 설비용량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최대 41기의 원전을 확대를 결정하였으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29년까지 신규원전 13기,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확대해 고탄소·고위험·고갈등 전력시스템이 유지될 전망이다. <p>② 4대강 사업의 후유증 방치와 산으로 간 제2의 4대강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한 설계·시공으로 인한 보의 안전성문제, 감사원 감사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의해 하천의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녹조발생 외에도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피해, 건설공사의 비리담합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지만 방치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보호구역이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으로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사업이 확산될 전망. <p>③ 암 발생의 증가와 환경유해인자·환경취약계층·환경취약지역·환경피해국민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부터 2011년까지 OECD 국가에서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 4대국에 불과하며, 직업 및 환경 위험 요인으로 인한 발암물질 노출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암요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미세먼지·방사능·전자파 등 환경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국민건강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취약계층 및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보다 중요해지

고 있음. 나아가 환경피해로 인한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2차·3차 피해 발생.

나. 목표

- 한국탈핵: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40년 완전폐쇄하고 전환수단으로 OECD·독일 수준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국토보호: 4대강복원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강화.
- 안전사회: 발암물질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화하고 환경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확대해 국민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다. 이행방법

①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

- 에너지법제개편: 탈핵에너지전환법, 녹색성장기본법·에너지법·전기사업법 등 에너지법제에 탈핵에너지전환 원칙 반영
- 에너지계획수정: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 원칙 반영
- 선진국수준의 수요관리: OECD·독일수준의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이를 위해 전기요금산정위원회 신설 및 기후정의세 도입
- 재생에너지의 확대: 소규모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의 경우 공급의무비율을 확대하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는 소비의무제도 도입.
- 핵재처리 금지: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하지 않고 직접처분을 원칙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이후 진행

②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국토환경보호

- 4대강 복원과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인공구조물의 해체와 4대강 및 하천습지복원여부를 결정하는 4대강복원위원회 설치,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
- 지속가능한 물 관리시스템 구축: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적·체계적·참여적인 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순환법 제정을 통해 물순환사회 실현
-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보호강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끌어 난개발을 방지
- 노후하고 위험한 댐의 철거와 댐건설 계획시 사용기한 및 철거계획을 수립토록하고, 댐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등 개정

③ 발암물질 관리 강화와 환경유해인자의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관리, 환경피해구제수단 강화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대통령 직속 국가암예방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암예방연구센터 설치, 암예방평가지표개발과 암예방정책추진을 위해 중장기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관리.
-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관리 강화
-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및 사후구제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피해자구제에 대한 요건 완화와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에 대한 노출 규제 및 건강보호 강화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고, 위해성 관리 강화

라. 이행절차 및 기간

- 한국탈핵2040은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녹색성장기본법·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 ▲수요 관리는 기후정의세법 제정, 전기사업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재생에너지확대는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2018년 이내 모두 발의할 예정임.
- 4대강복원특별법은 2016년에 발의할 예정이며, 물기본법·물순환 기본법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제화할 예정이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와 민관공동조사를 이끌어낼 예정임.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은 2017년 이내 제정할 예정이며,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법제화할 예정이며, 기타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함께 병행할 예정임.

마.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책 및 행정 변화 수단으로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이 없으며,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70원을 기준으로 하면 1408억, 1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011억, 150원 기준 시 3014억 비용이 소요되며, 인입비용 지원의 경우 연간 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p>정책 순위</p>	<p>8_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p>
<p>내용</p>	<p>가. 현황과 문제점</p> <p>① '가짜 안보'의 파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를 앞장 세웠으나 총체적 안보위기의 현실. 균형외교 실종과 강대국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 '소외' 외교, 구타관심병사-무기조달 비리·비효율성에 의해 기능 부전과 불신에 빠진 국방, '개성공단 폐쇄'로 대표되는 대북 지렛대 약화와 완충지대(및 부문) 소멸의 남북 관계 등. - 특히 북의 핵-미사일 능력이 크게 증강되었으나, 정부여당은 즉자적 강경 대응으로 일관 : 정부의 대책은 즉자적이고 실효성을 전혀 담보 못함. 대북 확장기 방송 재개, 사드 배치 추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강력하지 않고 강경할 따름인' 대북 압박과 제재 추진, 거기에 '북한붕괴 추진' 속내의 노골화, '핵무장론' 등 폭주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 통일대박'을 내세우나 정작 남북관계는 쪽박 상황이 되고 외교·안보 모두 위태로워진 것은 북한붕괴-흡수통일에 대한 집착, 정권안보와 대통령 심기경호 추구의 파멸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음. <p>② 화해협력정책 위기의 한 축, 무능한 야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연설에서 마치 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의 원인이 된 것처럼 호도하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합리화하고, '북한 붕괴'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이야기 함. 이는 비단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만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의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화해협력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지금의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적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합의가 크지 않은 점. 이것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무능과 혼선에 크게 기인함. 그들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여당의 논리와 정책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 혼선을 빚음. - 그들은 대중의 안보불안 심리에 편승해 '안보는 보수적으로'라는 가치를 들고 있음. 그들이 경험 등 교류협력과 안보를 분리시키는 것은 안보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에서는 경험 등 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약화시키게 됨.

나. 목표

- 평화공존과 접근을 통한 변화의 원칙을 견지해 남북관계 개선, 위기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를 되살려 가능한 한 조기에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비전으로서 ‘중견-평화가교 국가’ 대한민국을 제시함.
- 중견국가 : 한반도 정세 주도, 주변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대립에서 벗어나 지경학적 이익의 조화를 꾀하도록 선도, 세계적 차원 불평등 해소 및 비핵화-군축에 기여
- 평화국가 :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변, 동북아에 평화공존의 새역사를 만드는 다자안보협력 주도, 군복 입은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적 군대와 인간안보 구현
- 가교국가 :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상과 교통의 중심, 다양한 문명과 가치가 교류하고 융합의 꽃을 피우는 가교, 북한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 수행

다. 이행방법

① 평화 환경 조성 중견국 외교

- 마일중러 간 균형외교, 이익의 조화외교
- 동아시아 차원 전통적·비전통적 다자안보협력 증진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SOFA 전면개정 등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 과거사 철저 반성 기초한 평화로운 미래 구축의 신한일관계 정립
- 제3세계발전 기여외교, 세계의 비핵화-평화군축 이바지 평화외교

②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북미수교 지원 등 포괄적 타결 실행
- 남북 핫라인 재구축과 협의기구 운영
- 중장기 군비통제 회담 실시

③ 정예강군 목표 강력한 국방개혁

- 적정병력 40만명으로 군 병력 감축
- 유사 모병제 실시 : 4개월 의무복무 + 의무복무 이행 자원에서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
- 예비전력 현대화 : 군 전력의 40%를 예비군화
- 부대 구조 단순화 : 부대 통폐합으로 경쾌하고 단순한 지휘구조
-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
- 방산비리 척결과 무기획득체계 개선

④ 군복 입은 시민의 권리 보장

- 군 입대 대기기간 제로화
- 적정 급여 50만원, 보급품 완전 지급으로 빈부격차 없는 병영
- 군 의료와 민간위탁 의료 완전 무상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병영
- 그린캠프·관심병사 제도 폐지
- 군 옴부즈맨 도입 등 군인 인권 관련 법 개정

⑤ 남북 경험 등 교류협력의 활성화제도화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조속한 재가동 추진
-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설화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제공동체 형성의 제도적 뒷받침
- 유라시아대륙 경제시대 구축으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의 가교화
- 특사 파견 혹은 조속한 당국회담 재개, 국화지자체·민간의 교류 재개 → 정상회의 등 각급 당국회의의 정례화

라. 이행절차 및 기간

- 2016년 총선 직후 개성공단 재가동과 5.24조치 철회 등 남북교류·협력 복원 등을 위한 국회 결의, 남북관계 역진 방지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 개정
- 경험의 이전 수준 복원과 함께,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험의 제도화 뒷받침, 개성공단의 2,3단계 확충,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인프라 투자,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해당 안보리 제재 해제 필요), 북한의 특구와 연계된 제2·제3 개성공단 건설 등 경험의 단계적 활성화
- 당국회담의 조기 재개, 특사 파견 등으로 최악의 남북관계 타개. 이후 고위급 당국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상회담 추진. 정상회담 성사 후에는 정상회의 등 각급 당국 간 회의의 정례화
- 비핵화-평화체제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은 핵동결과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등을 교환하며 대화 재개.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북미수교 양자회담 등 병행

마.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특별히 재원을 소요치 않음.
- 다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및 대륙의 북방 및 남방 교통로와 연결, 남북러 가스관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 동 재정 마련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국 주도 AIIB를 적극 활용할 필요. 그리고 북한의 AIIB 등 국제 금융 및 경험 기구 가입 추진,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충,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민간의 대북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등 병행.
- 남북협력기금은 최근 몇 년간 계획 대비 집행이 1/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2015년에는 기금 자체가 전년에 비해 4.8% 줄어듦. 우선은 현 협력기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교류협력을 활성화. 추후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협력기금도 확충.
- 사병임금 50만원으로 인상은 현재 병력 기준 연 1조 9천억원 가량 소요 예상됨. 적정 병력 40만명으로의 감군과 병력 수 대비 비대한 장군과 고위장교 수 감축 등을 통한 인건비 감축, 방산비리 척결 등을 통해서 충분히 조달 가능. 유사모병제는 인구절벽에 처한 우리나라에서는 병력 조달과 적정 병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대안으로, 소요예산은 (간부 제외)사병 20만명에게 100만원 정도의 추가 월급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연 2조 4천억원이 필요함. 그 정도는 2016년 현재 국방예산이 약 39조원이므로 방만한 무기획득체계의 개선 등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함.

<p>정책 순위</p>	<p>9_ 차별없는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다양한 언론문화사회</p>
<p>내용</p>	<p>가. 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인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차별금지 관련 법률 제정 권고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는 포함시켰으나, 정부안은 미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정책의 후퇴를 보여줌 <p>① 여성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른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보면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로 하위권에 있음. 정책결정 및 관리자 직위에서 여성의 낮은 비율을 보이며,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회서비스업은 처우가 열악하며 감정노동과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해도 심각함. 질 낮은 일자리와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온라인 폭력의 급증이 이뤄지는 등 여성인권의 후퇴가 이뤄짐. <p>② 빈민분야(노점 중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역사와 함께 해온 노점은 도시 빈민과 서민의 주요한 생계수단이자 전통적인 생계형 자영업의 일종이며, 노점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없는 가운데 지자체는 여전히 단속 위주의 행정으로 일관함.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노점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점상의 생존권과 주민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 <p>③ 이주민과 이주아동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자발적인 사업장 이동 불가능 등 이주노동자는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시에도 체류권 보장이 어려우며,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경제적 취약계층임. 또한 부득이하게 체류 자격을 상실해 보육, 교육 등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으로 추산됨(법무부, 2013.2)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부모가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의 자녀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족 결합권 보장 등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 규정이 없어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④ 소수자 분야

- 차별금지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3개 발의되었으나, 보수 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2개 법안이 철회되어 사실상 제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제정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현재 이성간의 혼인 외에 동성커플, 비혼 동거커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음. 성소수자는 최근에서야 인권위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며, 고용영역에서는 응답자의 44.8%가 정체성 때문에 차별이나 따돌림,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차별과 폭력의 현실에 놓임(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⑤ 언론 분야

- 정부는 인터넷에서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인터넷에서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언론을 획일화하기 위한 포털의 손목 비틀기 및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가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 강화 등 법제도 개악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짐.

나. 목표

- 차별없는 인권선진국 달성
- 다양한 문화와 소수자가 존중되는 사회

다. 이행방법

① 여성분야

-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인상과 좋은 일자리 보장
 - * 감정노동보호 및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 일가정 양립 정착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소
 - *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 방문건강관리 등
 - * 3대(임신,육아,돌봄) 휴가제 확대 : 임신 초기 휴가지원 등
-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직장내 성희롱예방 강화
-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폭력 등 3대 폭력 대응
 - * 한국형 클레어법(영국의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 도입
 - * 스토킹 처벌 강화, 온라인 인권교육본부 설립

- 과도한 미용·성형산업 및 과장광고 규제 강화
 - * 성형수술시 의료진의 설명의무 준수, 외모지상주의 조장 개선

② 빈민분야(노점 중심)

- 노점상과 지역이 상생하는 노점기본법 추진
 - * 노점단체, 시민단체가 노점실태조사 및 기본정책 마련
 - * 국회에 지자체의 상상대책을 뒷받침하는 위원회 구성
- 식품위생법, 행정대집행법 개정 및 과태료 남용 금지
 - * 노점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와 위생기준 마련
 - * 노점에 대한 과도한 행정대집행 최소화, 집행절차 규제
 - * 지자체의 과태료 남용 제한, 전통시장내 노점상 보호

③ 이주민과 이주아동 분야

-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 * 제도적 기본권 침해 구제
 - *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국적취득 및 체류권의 문제 해소
 - * 이주여성 위기개입시스템과 구축 강화
- 미등록 이주아동, 무국적 아동의 권리보장 강화
 - * 출입국관리법 개정

④ 소수자 인권 분야

- 파트너십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혐오표현·혐오범죄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내 인권교육원 설치
- 차별금지법 제정

⑤ 언론분야

- 권력기관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MB 악법으로 실종된 언론독립과 시민주권 회복
-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송통신의 시민권리 실현
- 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TV 등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라.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마.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정치적 결단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재정이 소요되지 않음

정책 순위	10_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내용	<p data-bbox="304 434 1040 510">1 정치기득권 해체로 국민을 닮은 국회</p> <p data-bbox="296 555 547 600">가. 현황과 문제점</p> <ul data-bbox="316 622 1398 1048"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인의 부정부패, 과도한 특권으로 국민의 정치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기존 양당은 선거 때마다 공천혁신, 특권폐지를 약속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음. •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비례대표 의석만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정치개약으로 끝남. • 현재 원내 의석 20석 이상을 기준으로 한 교섭단체 제도는 철저하게 다수당 중심의 국회 운영으로 소수당의 참여를 봉쇄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사의 반영을 막고 있음. •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낙장대응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대책 구축과 관피아 척결 등의 과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p data-bbox="296 1099 416 1144">나. 목표</p> <ul data-bbox="316 1167 965 1256"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혁신과 기득권 해체로 국민을 닮은 정치불신 해소 • 정부혁신과 관피아 척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p data-bbox="296 1308 472 1352">다. 이행방법</p> <p data-bbox="316 1406 975 1451">① 돈/금수저/부정축재/무자격/부도덕 5대 불량정치 퇴출</p> <ul data-bbox="328 1462 1251 1552"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정치인에 대한 20대 총선 공천 배제 등 ‘국민눈높이 공천’ - 재보궐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 포기과 선거비용 50% 부담 등 ‘공천 무한책임제’ <p data-bbox="316 1603 1015 1648">②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의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p> <ul data-bbox="328 1659 1291 1917"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위상 고위공직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의원 세비는 현재 연봉 1억 4천만원에서 7,562만원으로 삭감 의원 수당 중 목적과 사용처가 불투명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폐지 등 세비삭감으로 절감한 187억원은 국회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입법지원 강화에 사용 - 국회의원 세비의 투명한 공개 및 독립적인 민간심사기구에서 세비 산정

③ 국민을 위한 선거개혁으로 양당독점체제 타파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민 의사를 반영한 국회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 (피)선거연령 인하, 노동자 투표권 보장 등 정치 참여 확대

④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 교섭단체제도 개혁으로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는 정치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설화,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 전환

⑤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

- 국가재난안전협업체계 구축과 고위공직자 관피아 방지
- 김영란법 재개정으로 부정청탁 방지, 문지마 특수활동비 축소
-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성 회복

라. 이행기간

- 2016년 국회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김영란법 등 개정안 발의

마. 재원조달방안

- 국회의원 세비 삭감으로 연 187억원 예산 절감 효과

2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

가. 현황과 문제점

-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 등 정치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함
- 국정원 외에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도·감청과 SNS 등으로 인한 국민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반면, 고(故) 성완종 리스트,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청탁 논란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나. 목표

-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후퇴한 민주주의의 복원

다. 이행방법

① 테러방지법 폐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전면개혁하고,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

②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찰과 도감청 방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제한조치 요건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③ 검찰 개혁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 특별검사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

④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